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수(단수) 처분 예고 통지(9.26.)

1. 귀 수용가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되어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단수) 처분 예정으로 불임의 예고 통지서를 수용가 현장에 부착 또는 현장에서 교부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2. 기한 내 미납시 급수중지하오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완납한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위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예고 통지서(사본) 1부. 끝.



수신자 정수예고자 57명(56개소)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정귀찬

수도과장

전결 2023. 9. 26.
최치식

협조자

시행 수도과-12782 (2023. 9. 26.) 접수

우 50619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제2청사 / <http://www.yangsan.go.kr>

전화번호 055-392-5551 팩스번호 055-392-5409 / kwichan@korea.kr / 부분공개(6)

역동적인 경제, 품격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좋은 도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단수) 처분 예고 통지서

- 수용가명 : K050 - 쉼거*(압류)
(사용자)
- 주 소 : 삼동2길 6, (중부동 174)
- 체 납 내 역 : 10 개월(건) 2,474,300 원
- 납 부 기 한 : 2023년 10월 06일(금)
- 처분 예정일 : 2023. 10. 10.(화) 이후

귀 수용가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양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정수처분)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기준일 2023.9.11.이므로 이미 납부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2023. 09. 21.

양 산 시



※ 문의처 :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관리팀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제2청사 전화: 055-392-5551)

< 본 통지서는 등기부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
(통지서 부착/교부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미발송)



수도요금 사이버창구(<https://www.yangsan.go.kr/waterpay>) → 요금 조회·납부 →
주소조회 → 위의 주소(예:북안남2길 36)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체납액 조회

수령자 이름:

수용가와 관계:

수령일자: 2023. . .

휴대전화: